

#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의원

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 
반갑습니다.

노원구 제3선거구 출신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의원입니다.

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「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현재 보호수로 지정 가능한 범위는 노목, 거목, 희귀목 등에 한정되어 나무의 종류로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.

이에, “역사적, 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” 나무 중에서도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구체

함으로써 보호수의 보호와 역사적·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게 실현하고자 합니다.

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역사적·학술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. (안 제3조제1항)

아무쪼록 이번에 정비된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특별시의 보호수 지정 및 관리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보호수의 보호뿐만 아니라 역사적·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미래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, 「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·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!